|  |  |  |
| --- | --- | --- |
|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 및 감독**  **관리방법**  2011년 9월 1일, 재정부 령 제64호  **제1장 총 칙**  **제1조**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를 규율하고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 자사평가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산평가기구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하고 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재정부는 자산평가업계의 주관부서로서 자산평가기구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전국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관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이하 성급 재정부서라 함)은 본 지역의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조** 중국자산평가협회는 전국 자산평가업계의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며, 재정부를 협조하여 전국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자산평가협회는 본 지역의 자산평가업계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성급 재정부서를 협조하여 본 지역의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자산평가기구의 업무범위에는 개별 자산평가, 자산조합 평가, 기업 가치평가, 기타 자산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문업무가 포함된다.  **제6조** 자산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 직업종사 준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종사하는 자산평가업무는 행정구역, 업계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불법 간여하지 못한다.  **제8조** 자산평가기구는 중국자산평가협회에 가입하여 중국자산평가협회 단체회원으로 되어야 한다.  **제2장 자산평가기구의 설립**  **제9조** 자산평가기구는 일반 파트너십(특수한 일반 파트너십 포함, 이하 파트너십제라 함)의 형식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제라 함)의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자산평가기구의 명칭에는 "자산평가"란 단어를 달아야 한다.  자산평가기구의 상호는 이미 허가를 득한 자산평가기구의 상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이외에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파트너가 2명 이상일 것  (2) 공인자산평가사가 5명 이상일 것  (3) 파트너가 실제 납입한 출자총액이 최저로 인민폐 10만 위안일 것. 그중 특수한 일반 파트너십 형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파트너가 실제 납입한 출자총액이 최저로 인민폐 30만 위안일 것.  **제12조** 회사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이외에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주주가 2명 이상일 것  (2) 공인자산평가사가 8명 이상일 것  (3) 등록자본금이 최저로 인민폐 30만 위안일 것.  **제13조** 자산평가기구의 파트너 또는 주주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소지할 것  (2)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취득한 후 최근 3년간 연속 자산평가업무에 전직 종사하였을 것  (3) 파트너 또는 주주로 되기 전 3년 내에 평가 직업 행위로 인해 업계 자율징계나 행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14조** 자산평가기구는 내부 관리의 필요에 따라 이 방법 제11조부터 제13조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1명의 비 공인자산평가사 자연인을 파트너 또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5조**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의 수석파트너와 회사제 자산평가기구의 법정대표자는 당해 기구에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소지한, 파트너사무를 집행하는 파트너 또는 주주가 담임해야 한다.  **제16조**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또는 주주(이하 신청인이라 함)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성급 재정부서에 신청하며,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자산평가기구 설립신청표  (2) 파트너계약서 또는 회사 정관  (3)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명칭예비등록통지서  (4)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파트너 또는 주주의 이력서, 수석파트너 또는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인선  (6)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의 심사 확인을 거친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괄표, 파트너 또는 주주가 연속 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연한, 그리고 평가 직업행위에서 업계 자율징계나 행정적 처분을 받은 증명자료  (7) 공인자산평가사 증서와 신분증 사본  (8) 공인자산평가사 사무소 이적 신청표  (9) 사무장소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 유효증명서.  **제17조** 성급 재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아울러 성급 재정부서 전용인감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힌 서면 증빙문건을 발급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규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1회에 고지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성급 재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서류 중 자산평가기구 명칭, 파트너나 주주,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 공인자산평가사 등 관련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최저 5일 근무일이다.  공시기간에 실명 신고가 있거나 이의가 들어온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마땅히 이를 심사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성급 재정부서는 자산평가기구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근무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적당하게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최장 10일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기간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0조** 성급 재정부서가 자산평가기구 설립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문건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문건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의 명칭과 조직형태  (2) 자산평가기구의 파트너나 주주 및 그 출자와 관련한 기본상황  (3) 자산평가기구의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  (4) 공인자사평가사의 기본상황  (5) 공인자산평가사가 사무소 이적수속을 완성하는 시간적 요구.  **제21조** 신청인은 허가문건을 지참하고 공상등록등기와 중국자산평가협회 회원가입 수속을 마친 후 성급 재정부서에서 자산평가자격증서를 수령하고 아울러 영업집조 사본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한 파트너계약서 또는 회사정관을 성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자산평가자격증서는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며, 성급 재정부서에서 본 기관의 인감을 날인한 후 발급한다.  **제22조** 성급 재정부서가 자산평가기구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과 신청서류를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하며, 아울러 허가문건을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자산평가협회와 중국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한다.  재정부에서 심사허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급 재정부서에 시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23조** 성급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자산평가기구 설립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자산평가기구 분기기구의 설립**  **제24조** 자산평가기구 분지기구(이하 분지기구라 함)란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타 지역에 설립하여 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분지기구의 민사상 책임은 그 분지기구를 설립한 자산평가기구가 부담한다.  **제25조** 분지기구의 명칭은 "자산평가기구 명칭 + 분지기구 소재지 행정구역 명칭 + 분소(분공사)"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26조**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산평가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고 내부관리 제도가 건전할 것  (2) 20명 이상의 공인자산평가사가 있고 여기에는 분지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인자산평가사와 이미 설립된 기타 분지기구의 공인자사평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자산평가기구가 신청을 제출하기 전 3년의 평가업무 수입이 합계로 적어도 인민폐 1,500만 위안에 달할 것  (4) 설립 신청일 전 3년 내에 평가 직업행위로 인해 업계의 자율징계나 행정적 처분을 받는 적이 없을 것.  **제27조** 분지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자산평가사가 최저 6명이 있을 것  (2) 고정된 사무장소가 있을 것.  **제28조** 분지기구 책임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소지할 것  (2)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취득한 후 만 3년 직업에 종사했을 것  (3) 책임자로 되기 전 3년 내에 평가 직업행위로 인해 업계 자율징계 또는 행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29조** 요건을 구비한 자산평가기구가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의 분지기구 설립신청표  (2) 자산평가기구의 분지기구 설립 결의서  (3) 자산평가기구가 지정한 분지기구 영업범위  (4) 분지기구 책임자의 이력서  (5) 자산평가기구의 신청 제출 전 3년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6)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자산평가협회가 조사 확인한 자산평가기구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괄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 및 신분증 사본  (7) 분지기구 소재지 자산평가협회가 확인한, 분지기구에 이적할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괄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 및 신분증 사본과 이적증명서  (8) 분지기구 사무장소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 유효증명서  (9) 자산평가기구의 분지기구 관리방법.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서 발급한 분지기구 설립에 대한 서면의견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자산평가기구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는 분지기구 설립 신청서류를 심사하며, 심사허가 절차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1조** 자산평가기구는 분지기구의 공상등기 수속을 마친 10일 근무일 내에 분지기구의 영업집조 사본을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32조**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는 허가문건을 그 분지기구를 설립한 자산평가사무소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와 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해야 한다.  **제4장 자산평가기구 및 분지기구의**  **변경과 종료**  **제33조** 자산평가기구나 분기기구의 명칭,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 파트너나 주주, 분지기구의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의결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성급 재정부서에 비안(備案)하고 아울러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에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34조** 자산평가기구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합병 또는 분립할 수 있다.  합병 또는 분립 후 신규 설립한 자산평가기구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병 또는 분립 후 존속하는 자산평가기구는 이 방법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자산평가기구가 합병 또는 분립 수속을 할 시에는 합병 또는 분립계약서, 합병 또는 분립 기준일 각자의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립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 자산평가기구 평가업무서류 보관방안  (2)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 자산평가기구 직업 리스크기금 처리방안  (3)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 자산평가기구 업무, 직업책임 승계관계.  **제36조**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가 회사제 자산평가기구로 전환하거나 또는 회사제 자산평가기구가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로 전환 시에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허가문건에 체제전환 후 기구와 체제 전환 전 기구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체제 전환 후의 기구가 공상등록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체제 전환 전 기구의 자산평가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제37조**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무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성급 재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자산평가기구 다성간 행정구역 이전 신청표와 파트너 또는 주주회의 이전 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출지 성급 재정부서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는 전입지 성급 재정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 다성간 행정구역 이전신청표  (2) 전입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명칭예비등록통지서  (3) 자산평가기구 자격증서 정, 부본의 사본  (4) 파트너나 주주의 이력서,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인선  (5) 파트너나 주주회의 결의서  (6) 전출지　자산평가협회가　확인한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람표  (7) 사무장소의 재산권이나 사용권 유효증명서.  전입지 성급 재정부서에서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자산평가기구의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  (2)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의해 취소되었거나 또는 자산평가자격증서가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자산평가기구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3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분지기구의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가 그가 설립한 분지기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자산평가기구의 자산평가자격이 취소당한 경우  (3) 성급 재정부서가 분지기구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40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 말소수속을 하는 경우 자산평가기구는 자산평가자격증서를 반납하고 평가업무서류 보관방안을 제출하는 이외에 평가업무 보존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1조**성급 재정부서가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 말소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에 통지하고 아울러 관련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42조**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는 그가 관할하는 분지기구의 변경, 종료 상황을 그 분지기구를 설립한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와 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그가 관할하는 자산평가기구 및 분지기구의 변경, 종료 상황을 재정부와 중국자산평가협회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43조** 자산평가기구 파트너나 주주, 그리고 분기기구 책임자는 본 기구에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자산평가업무에 전직 종사해야 한다. 다만 이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파트너나 주주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자산평가기구는 완벽한 내부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관리 제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사관리 제도  (2) 재무관리 제도  (3) 직업 질 컨트롤 제도  (4) 평가업무관리 제도  (5) 업무 보관서류 관리제도.  **제45조** 자산평가기구는 수석평가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수석평가사는 본 기구에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취득한 파트너나 주주가 담임하여 직업 질 컨트롤을 책임진다.  **제46조** 자산평가기구는 규정에 따라 직업리스크기금을 적립, 사용하고 직업 책임보험을 구매하고 직업책임 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47조** 자산평가기구는 인사, 재무, 직업규범, 품질 컨트롤, 고객서비스, 기업이미지 등 면에서 그가 설립한 분지기구에 대해 통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증권 선물과 관련되는 평가업무를 제외하고 자산평가기구는 분지기구에 위임하여 분지기구의 명의로 자산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자산평가기구가 자산평가자격증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에 증서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0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1)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의 설립요건 유지 상황  (2) 자산평가기구의 성급 재정부서 비안(備案) 신고상황  (3)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의 직업능력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감독검사 사항.  자산평가협회는 자산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직업종사 질 검사를 실시하고 신의성실 보관서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51조** 자산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존립기간에 지속적으로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설립요건과 제43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산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관련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성급 재정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90일 내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기기구가 90일 내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그 자산평가자격이나 분지기구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2조** 자산평가기구는 매년 4월 30일 전에 소재지 성급 재정부서에 아래의 자료를 송부하고 동시에 부본을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 기본상황표  (2)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자산평가기구의 직전 연도 자산평가프로젝트 일괄표  (4) 직업 책임보험 보험증서 사본, 누적 직업리스크기금 증명서류.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지기구 관련 자료와 자산평가기구가 분지기구에 위임한 영업범위를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53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자산평가기구가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경고를 주어야 한다.  **제54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하거나 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그 자산평가자격 또는 분지기구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5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경고를 줄 수 있다.  (1) 이 방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관리 제도를 구축, 완벽히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방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직업리스크기금을 적립, 사용하지 않거나 직업책임보험을 구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방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방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재정부서의 감독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기타 기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기타 기구나 개인이 본 기구의 명의로 평가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  (2) 자산평가자격증서를 개찬, 임대, 대출한 경우  (3) 위탁인 또는 평가대상 단위로부터 업무약정서에서 약정한 이외의 수수료나 기타 재물을 요구하거나 업무 편리를 이용하여 기타 부당이익을 도모한 경우  (4) 강박, 사기, 악의적으로 요금기준을 낮추는 등의 부당방식으로 업무를 수주한 경우  (5) 위탁인 또는 평가대상 단위의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6) 본 기구 공인자산평사가가 이름만 달로 직무수행은 하지 않도록 허락하거나 본 기구 공인자산평가사가 기타 기구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행정적 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결정하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하고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58조** 재정부서의 업무직원이 심사허가와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수행에 소홀히 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국가기밀,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제7장 부 칙**  **제59조** 경제 낙후지역에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이 방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문화예술, 자연자원 등의 특별 자산평가에 종사하는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요건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0조** 이미 법에 따라 설립한 기타 평가기구가 이 방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성급 재정부서에 자산평가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이 방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05년 5월 11일에 반포한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 관리방법》(재정부 령 제2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资产评估机构审批和监督**  **管理办法**  2011年9月1日，财政部令第64号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资产评估机构的审批，加强对资产评估机构的监督，促进资产评估行业健康发展，制定本办法。  **第二条**　资产评估机构是指依法设立，取得资产评估资格，从事资产评估业务的机构。  **第三条**　财政部是资产评估行业主管部门，制定资产评估机构管理制度，负责全国资产评估机构的审批和监督管理。  　 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以下简称省级财政部门）负责本地区资产评估机构的审批和监督管理。  **第四条**　中国资产评估协会负责全国资产评估行业的自律性管理，协助财政部审批和监督管理全国资产评估机构。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资产评估协会负责本地区资产评估行业的自律性管理，协助省级财政部门审批和监督管理本地区资产评估机构。  **第五条**　资产评估机构的业务范围包括：单项资产评估、资产组合评估、企业价值评估、其他资产评估，以及相关的咨询业务。  **第六条**　资产评估机构应当依法取得资产评估资格， 遵守有关法律法规、执业准则和执业规范。  **第七条**　资产评估机构依法从事资产评估业务，不受行政区域、行业限制，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干预。  **第八条**　资产评估机构应当加入中国资产评估协会，成为中国资产评估协会团体会员。    **第二章　资产评估机构的设立**  **第九条**　资产评估机构采用普通合伙（含特殊的普通合伙，以下简称合伙制）的形式设立，或者采用有限责任公司（以下简称公司制）的形式设立。  **第十条**　资产评估机构名称应当包含“资产评估”字样。  　 资产评估机构字号不得与已经批准设立的资产评估机构字号重复。  **第十一条**　设立合伙制资产评估机构，除符合国家有关法律法规规定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2名以上符合本办法规定的合伙人；  　（二）有5名以上注册资产评估师；  　（三）合伙人实际缴付的出资总额不低于人民币10万元，其中，以特殊的普通合伙形式设立的，合伙人实际缴付的出资总额不低于人民币30万元。  **第十二条**　设立公司制资产评估机构，除符合国家有关法律法规规定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2名以上符合本办法规定的股东；  　 （二）有8名以上注册资产评估师；  （三）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30万元。  **第十三条**　资产评估机构的合伙人或者股东应当具备下列条件：  　 （一）持有注册资产评估师证书；  　 （二）取得注册资产评估师证书后，近三年连续专职从事资产评估业务；  　（三）成为合伙人或股东前三年内，未因评估执业行为受到行业自律惩戒或者行政处罚。  **第十四条**　资产评估机构根据内部管理需要，在符合本办法第十一条至第十三条规定的情况下，可以增加一名非注册资产评估师的自然人担任合伙人或者股东，具体条件另行规定。  **第十五条**　合伙制资产评估机构的首席合伙人和公司制资产评估机构的法定代表人应当由该机构持有注册资产评估师证书的执行合伙事务的合伙人或者股东担任。  **第十六条**　设立资产评估机构，应当由全体合伙人或者股东（以下简称申请人）指定的代表或者共同委托的代理人，向省级财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申请材料：  　 （一）资产评估机构设立申请表；  　 （二）合伙协议或者公司章程；  　 （三）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名称预先核准通知书；  　（四）设立合伙制资产评估机构的，提供出资证明；设立公司制资产评估机构的，提供验资报告；  　（五）合伙人或者股东简历，以及担任首席合伙人或者法定代表人的人选；  　（六）经所在地资产评估协会核实的注册资产评估师注册情况汇总表、合伙人或者股东连续专职从事资产评估业务年限及其未因评估执业行为受到行业自律惩戒或者行政处罚的证明材料；  　（七）注册资产评估师证书和身份证的复印件；  　（八）注册资产评估师转所申请表；  　　（九）办公场所的产权或者使用权的有效证明。  **第十七条**　省级财政部门应当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进行审查，依法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的决定，并出具加盖省级财政部门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书面凭证。  　 对于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规定形式的，应当在5个工作日内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视为受理。  **第十八条**　省级财政部门在受理申请后，应当将申请材料中资产评估机构名称、合伙人或者股东、首席合伙人或者法定代表人、注册资产评估师等有关情况予以公示，公示期不得少于5个工作日。  　 公示期间有实名举报或提出异议的，省级财政部门应当组织核实。  **第十九条**　省级财政部门应当自受理设立资产评估机构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按照规定对申请材料进行审核，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20个工作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但最长不得超过10个工作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  **第二十条**　省级财政部门作出批准设立资产评估机构决定的，应当向申请人出具批准文件。批准文件应当载明下列事项：  　（一）资产评估机构名称及组织形式；  　（二）资产评估机构的合伙人或者股东及其出资的基本情况；  　（三）资产评估机构的首席合伙人或者法定代表人；  　（四）注册资产评估师的基本情况；  　（五）注册资产评估师完成转所手续的时间要求。  **第二十一条**　申请人持批准文件办理完成工商注册登记和中国资产评估协会入会手续后，应当向省级财政部门申领资产评估资格证书，同时将营业执照复印件以及在工商行政管理部门备案的合伙协议或者公司章程报省级财政部门备案。  　 资产评估资格证书由财政部统一印制，由省级财政部门加盖本机关印章后颁发。  **第二十二条**　省级财政部门批准设立资产评估机构的，应当将批准文件及申请材料报财政部备案，同时将批准文件抄送资产评估机构所在地资产评估协会和中国资产评估协会。  　 财政部发现审批不当的，应当责令省级财政部门改正或者撤销。  **第二十三条**　省级财政部门依法作出不予批准设立资产评估机构决定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说明理由，并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三章　资产评估机构分支机构的设立**  **第二十四条**　资产评估机构分支机构（以下简称分支机构）是指资产评估机构依法在异地设立的从事资产评估业务的机构。  　 分支机构的民事责任由设立该分支机构的资产评估机构承担。  **第二十五条**　分支机构的名称应当采用“资产评估机构名称＋分支机构所在地行政区划名＋分所（分公司）”的形式。  **第二十六条**　拟设立分支机构的资产评估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一）取得资产评估资格三年以上，内部管理制度健全；  　（二）有20名以上注册资产评估师，不包括拟转到分支机构执业的注册资产评估师及已设立的其他分支机构的注册资产评估师；  　 （三）资产评估机构提出申请之日前三年评估业务收入合计不少于人民币1500万元；  　 （四）设立申请日前三年内未因评估执业行为受到行业自律惩戒或者行政处罚。  **第二十七条**　分支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6名以上注册资产评估师；  　 （二）有固定的办公场所。  **第二十八条**　分支机构负责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持有注册资产评估师证书；  　 （二）取得注册资产评估师证书后执业满三年；  　 （三）成为负责人前三年内，未因评估执业行为受到行业自律惩戒或者行政处罚。  **第二十九条**　具备条件的资产评估机构设立分支机构，应当向分支机构所在地省级财政部门提交下列材料：  　 （一）资产评估机构设立分支机构申请表；  　 （二）资产评估机构作出设立分支机构的决议；  　 （三）资产评估机构授权分支机构的营业范围；  　 （四）拟任分支机构负责人的简历；  　 （五）资产评估机构提出申请之日前三年的年度审计报告；  　（六）经资产评估机构所在地资产评估协会核实的资产评估机构注册资产评估师注册情况汇总表、注册资产评估师证书和身份证的复印件；  　（七）经分支机构所在地资产评估协会核实的拟转入分支机构的注册资产评估师注册情况汇总表、注册资产评估师证书和身份证的复印件以及转所证明；  　（八）分支机构办公场所的产权或者使用权的有效证明；  　（九）资产评估机构对其分支机构的管理办法。  　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域设立分支机构的，还应当提交资产评估机构所在地省级财政部门出具的设立分支机构的书面意见。  **第三十条**　资产评估机构分支机构所在地省级财政部门应当对分支机构设立的申请材料进行审查，审批程序参照本办法第十七条至第二十三条的有关规定办理。  **第三十一条**　资产评估机构应当在完成分支机构的工商登记手续后10个工作日内，将分支机构的营业执照复印件报送资产评估机构所在地的省级财政部门。  **第三十二条**　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域设立分支机构的，分支机构所在地的省级财政部门应当将批准文件抄送设立该分支机构的资产评估机构所在地的省级财政部门及资产评估协会。    **第四章　资产评估机构及分支机构的 变更和终止**  **第三十三条**　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的名称、首席合伙人或者法定代表人、合伙人或者股东、分支机构负责人发生变更的，应当自其作出变更决议之日起20日内向所在地省级财政部门备案，并抄送所在地资产评估协会。  **第三十四条**　资产评估机构可以依据国家有关法律法规合并或者分立。  　　合并或者分立后新设的资产评估机构，按照本办法第十七条至第二十三条、第三十五条的规定办理设立手续。  　　合并或者分立后存续的资产评估机构，按照本办法第三十三条、第三十五条的规定办理。  **第三十五条**　资产评估机构办理合并或者分立手续时，应当提供合并或者分立协议、合并或者分立基准日各方经审计的会计报表。  　　合并或者分立协议应当包括以下事项：  　　（一）合并或者分立前资产评估机构评估业务档案保管方案；  　　（二）合并或者分立前资产评估机构职业风险基金的处理方案；  　　（三）合并或者分立前资产评估机构评估业务、执业责任的继承关系。  **第三十六条**　合伙制资产评估机构转为公司制资产评估机构，或者公司制资产评估机构转为合伙制资产评估机构，按照本办法第十七条至第二十三条的规定办理设立手续。  　　省级财政部门在批准文件中应当载明转制后机构与转制前机构的关系，在转制后机构办理完成工商注册登记之前，转制前机构的资产评估资格继续有效。  **第三十七条**　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划迁移办公场所，应当首先向迁出地省级财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划迁址申请表和合伙人或者股东会的迁址决议。获得迁出地省级财政部门书面意见后，向迁入地省级财政部门提交下列材料：  　　（一）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划迁移申请表；  　　（二）迁入地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名称预先核准通知书；  　　（三）资产评估机构资格证书正、副本原件；  　　（四）合伙人或者股东简历，以及担任首席合伙人或者法定代表人的人选；  　　（五）合伙人或者股东会决议；  　　（六）迁出地资产评估协会核实的注册资产评估师注册情况一览表；  　　（七）办公场所的产权或者使用权的有效证明。  　　迁入地省级财政部门批准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划迁移办公场所的，按照本办法第十七条至第二十三条的规定办理设立手续。  **第三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省级财政部门应当办理资产评估资格的注销手续：  　　（一）资产评估机构依法终止的；  　　（二）资产评估资格被依法撤销的，或者资产评估资格证书被依法吊销的；  　　（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应当注销资产评估资格的其他情形。  **第三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省级财政部门应当办理分支机构的注销手续：  　　（一）资产评估机构决定撤销其设立的分支机构；  　　（二）资产评估机构的资产评估资格被注销；  　　（三）省级财政部门撤销分支机构设立许可；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应当注销分支机构的其他情形。  **第四十条**　办理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注销手续的，资产评估机构应当交回资产评估资格证书，提交评估业务档案保管方案并妥善保管评估业务档案。  **第四十一条**　省级财政部门办理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注销手续的，应当通知所在地资产评估协会，并将有关情况予以公告。  **第四十二条**　分支机构所在地的省级财政部门应当将所管辖的分支机构变更、终止情况，抄送设立该分支机构的资产评估机构所在地的省级财政部门及资产评估协会。  　　省级财政部门应当将所管辖的资产评估机构及分支机构变更、终止情况向财政部和中国资产评估协会备案。  **第五章　监督管理**  **第四十三条**　资产评估机构合伙人或者股东以及分支机构的负责人应当在本机构注册，并专职从事资产评估业务，本办法第十四条规定的合伙人或者股东除外。  **第四十四条**　资产评估机构应当建立完善的内部管理制度。内部管理制度应当包括下列内容：  　　（一）人事管理制度；  　　（二）财务管理制度；  　　（三）执业质量控制制度；  　　（四）评估业务管理制度；  　　（五）业务档案管理制度。  **第四十五条**　资产评估机构应当建立首席评估师制度。首席评估师由本机构持有注册资产评估师证书的合伙人或者股东担任，负责执业质量控制。  **第四十六条**　资产评估机构应当按规定提取和使用职业风险基金，购买职业责任保险，建立职业责任保障机制。  **第四十七条**　资产评估机构应当在人事、财务、执业规范、质量控制、客户服务、企业形象等方面对其设立的分支机构进行统一管理。  **第四十八条**　除证券期货相关评估业务外，资产评估机构可以授权分支机构以分支机构的名义出具资产评估报告。  **第四十九条**　资产评估机构的资产评估资格证书遗失或者毁损的，应当向原发证机关申请补领或换发证书。  **第五十条**　省级以上财政部门依法对下列事项实施监督检查：  　　（一）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保持设立条件的情况；  　　（二）资产评估机构向省级财政部门备案事项的报备情况；  　　（三）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的执业行为；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监督检查事项。  　　资产评估协会应当对资产评估机构及分支机构实施执业质量检查，建立诚信档案制度。  **第五十一条**　资产评估机构及其分支机构存续期间应当持续符合本办法规定的设立条件和第四十三条的规定。  　　违反第一款规定的，资产评估机构及其分支机构应当自不符合有关条件的情形出现之日起10个工作日内，将有关情况向省级财政部门书面报告，并于90日内达到规定条件。  　　违反第一款规定的，且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未在90日内达到规定条件的，省级财政部门应当撤销其资产评估资格或者分支机构的设立许可，并予以公告。  **第五十二条**　资产评估机构应当在每年4月30日之前，向所在地省级财政部门报送下列材料，并抄送所在地资产评估协会：  　　（一）资产评估机构基本情况表；  　　（二）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上年度会计报表；  　　（三）资产评估机构上年度资产评估项目汇总表；  　　（四）职业责任保险保单复印件、累计职业风险基金证明材料。  　　资产评估机构跨省级行政区划设有分支机构的，应当将该分支机构有关材料及资产评估机构授权分支机构的营业范围报送分支机构所在地的省级财政部门。  **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三条**　在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设立申请时，申请人或者资产评估机构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的，省级财政部门应当不予受理或者不予批准，并予以警告。  **第五十四条**　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资产评估资格或者设立分支机构的，省级财政部门应当撤销其资产评估资格或者分支机构的设立许可，并予以公告。  **第五十五条**　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省级以上财政部门应当责令限期改正，并可予以警告：  （一）未按本办法第四十四条规定建立完善内部管理制度的；  　 （二）未按本办法第四十六条规定提取和使用职业风险基金或者购买职业责任保险的；  　 （三）违反本办法第五十一条第一款规定，未在规定期限内报告的；  　 （四）未按本办法第五十二条规定报送材料的；  　 （五）未配合财政部门实施监督检查的。  **第五十六条**　资产评估机构或者分支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省级以上财政部门应当责令限期改正，予以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可以处以不超过违法所得3倍、最高不超过3万元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处以1万元以下的罚款：  　 （一）冒用其他机构名义、允许其他机构或者个人以本机构名义执行评估业务的；  　 （二）涂改、出租、出借资产评估资格证书的；  　（三）向委托人或者被评估单位索取、收受业务约定书约定以外的酬金或者其他财物，或者利用业务之便，谋取其他不正当利益的；  　（四）采取强迫、欺诈、恶意降低收费标准等不正当方式招揽业务的；  　（五）泄露委托人或者被评估单位商业秘密的；  　（六）允许本机构注册资产评估师只挂名不执业，或者明知本机构注册资产评估师在其他机构执业而不制止的。  **第五十七条**　省级以上财政部门作出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作出行政处罚决定的事实、理由及依据，并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权利。  **第五十八条**　财政部门的工作人员在实施审批和监督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国家机密、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    **第七章　附　则**  **第五十九条**　在经济欠发达地区设立资产评估机构确实难以达到本办法规定条件的，可以适当降低有关条件，具体办法另行规定。  　 设立从事文化艺术、自然资源等特别资产评估的资产评估机构，其设立条件可以适当调整，具体办法另行规定。  **第六十条**　已经依法设立的其他评估机构，符合本办法第十一条至第十五条规定的，可以向省级财政部门申请资产评估资格，按照本办法第十七条至第二十三条有关规定办理。  **第六十一条**　本办法自2011年10月1日起施行。财政部2005年5月11日发布的《资产评估机构审批管理办法》(财政部令第22号)同时废止。 |